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중앙회(이하 '한교선중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기독교를 믿는 교직원의 신앙성숙과 교육 및 선교 역량을 함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하며 선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본회는 중앙회, 지방회, 지역회, 신우회 등으로 조직한다.

제4조【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12호)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선교지도자 비전캠프 및 양성 훈련
2. 문서선교를 위한 서적 및 소식지 발간
3. 기독교교육자 역량 교육 및 연찬회 실시
4. 다음세대 양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사업
5. 통일을 대비한 북한 교육선교 기반 조성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구분】회원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예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전·현직 기독교 교직원으로서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전·현직 기독교 교직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지만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전·현직 기독교 교직원은 아니지만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5. 예비회원은 교원 양성기관에 재학하면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7조【권리】

1. 본회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 특별회원과 예비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본회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본 회 활동 시 예배와 회의 참석
4.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상임고문】

1. 본회는 기독교신앙이 투철하며 교육선교의 소명감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상임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위원회

제1절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인, 상임고문 2인, 부회장(분과위원장) 20인 이내, 각 분과위원회 고문 및 총무, 사무총장1인, 사무부총장1인, 감사2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선교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 :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본 회의 연간계획 및 총회,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 업무를 기획하여 시행한다.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순서대로 하기로 한다.
3. 분과위원회 고문 : 분과위원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게 자문하고 협력한다.
4. 분과위원회 총무 : 각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업무를 추진한다.
5.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 추진 관리한다.
6. 사무부총장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서기 : 본회의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문서관리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한다.
8.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9. 회계 :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11. 감사 : 매년 1회 이상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자격】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및 임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고문·총무는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상근 임원】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상근토록 할 수 있다.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약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며 실행위원회에서 임기 연장을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2절 분과위원회

제16조【조직】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고문과 위원장 그리고 총무 및 위원을 두어 그 업무를 추진한다.

1. 운영기획위원회 : 주요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
2. 행정조직위원회 : 선교회의 각종 업무 체계화 및 보존, 보급에 관한 일
3. 교육훈련위원회 : 회원의 신앙 연찬 및 교육훈련, 성경공부 교재 발간에 관한 일
4. 예배음악위원회 : 선교회의 예배 및 행사시 예배계획과 교회음악(찬송 등)에 관한 일
5. 친교봉사위원회 : 회원의 친목과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친교 및 봉사에 관한 일
6. 홍보출판위원회 : 교육선교 소식지, 홍보에 필요한 서적 및 자료 발간 배포에 관한 일
7. 차세대발전위원회 :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을 통하여 발전적 역할 수행
8. 미래세대육성위원회 :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신앙 지도 및 자료 개발, 훈련에 관한 일
9. 대외협력위원회 : 대외적으로 유관기관과 MOU 체결 및 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일
10. 시설물품위원회 : 중앙회 사무실의 각종 비품, 소모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일
11. 정보통신위원회 : 중앙회 홈페이지 운영 및 지방회, 지역회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지원, 임원 협의용 SNS 운용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일
12. 자산재정위원회 : 자산과 재정의 관리와 확충, 집행과 결과 보고에 관한 일
13. 국내외선교위원회 : 국내 및 북한에 지방회, 지역회, 신우회 등 조직 및 관리
14. 장애복지위원회 : 학교 현장의 장애 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관한 일
15. 기독교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 회원들의 교육선교 활동에 있어 인권 침해 및 방해 차별행위 등의 사전 방지조치와 문제발생시 해결에 관한 일(회원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 포함)
16. 교육과정위원회: 성경을 토대로한 복음주의적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일

제17조【구성】각 분과위원회에는 고문, 위원장 및 총무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제18조【임무】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사업을 계획 하고 추진한다.

제19조【분과위원의 선출 및 임기】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실행위원회

제20조【구성】회장, 부회장(분과위원장), 사무총장, 회계로 구성한다

제21조【회의】회의는 사안에 따라 모임을 갖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역할】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및 현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안을 마련하여 임원회에 상정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 등

제23조【구성】특별한 사업이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 및 실무위원】본 회의 운영과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간사】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임기는 1년이며 실행위원회에서 임기 연장을 검토하고 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5장 회 의

제26조【종류】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7조【총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이를 조직 운영한다.

1. 총회는 중앙회 임원과 각 지방 및 지역회 대의원(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 임원 또는 지방회 및 지역회 대의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 개정
 - 2) 임원(회장, 감사) 선출
 - 3) 사업계획 승인
 - 4)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 5) 회비 결정
 - 6) 선교회 재산 및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지방회, 지역회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주요한 사항

제28조【임원회】임원회는 중앙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실행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 및 기타사항을 처리한다.
2. 평소에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제에 대한 의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임원 상호 간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3. 각 분과위원회 위원, 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실행위원회】사안에 따라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해당위원회 업무사항을 협의하여 추진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모든 회의는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칙 개정 및 그 밖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32조【재원】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헌금,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산하기관

제34조【지방회】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회를 두며, 그 지방 내의 지역회를 설립하고 육성 한다.

제35조【지역회】각 시·군·자치구에 지역회를 두며, 각 학교 신우회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36조【신우회】각 학교나 유관기관에 신우회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제8장 협력기관 등

제37조【병설기관】학교교육 발전 방안 및 교육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각종 교재 및 서적을 출판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학교교육연구원을 병설하고 서로 협력한다.

제38조【후원단체】본 회의 효율적인 후원을 위하여 후원단체를 두고,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39조【시행세칙】본 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40조【준용관례】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41조【지방회 등의 회칙】지방회, 지역회, 신우회는 본 회칙 제1, 2, 3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시행】이 회칙은 사단법인 설립으로 인해 2017년 6월 10일 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1978.12.9.제정, 1990.1.15.개정, 1993.1.15.개정, 2000.1.18.전문개정,
2002.1.15 개정, 2005.1.25 개정, 013.1.22 개정, 2015.4.25. 일부개정,
2016.1.12 개정, 2016.10.22 개정, 2017.6.10. 제정, 2019년 1월 8일 개정)